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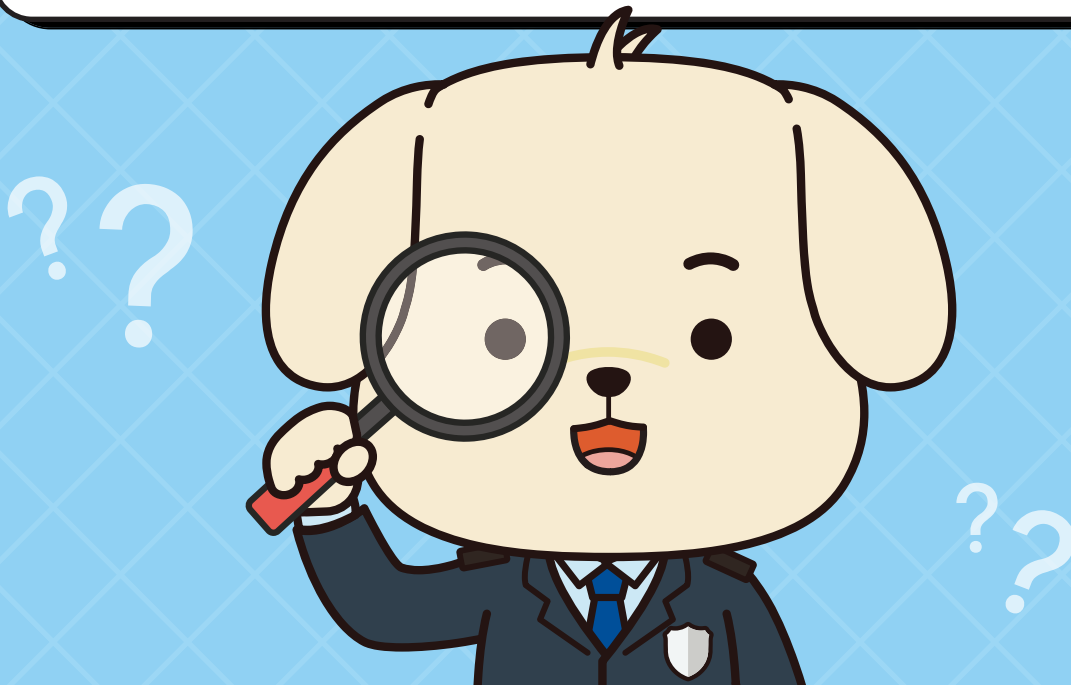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 응답



1.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개요
2. 과세자료 제출 생략
3. 동일 조건 거래, 연 1회 과세자료 제출
4. 8개 분야 과세자료 제출
5. 과세자료 사후 제출 요청 및 제재관리 방안



관세청

1.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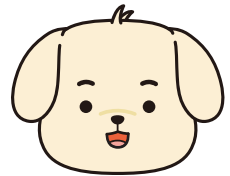
Q1.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수입시점에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신고내용의 오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였습니다.

Q2.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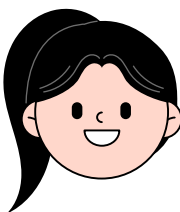
1. 성실기업(AEO 수입 부문, ACVA 결정물품)과 소규모 수입 기업[납세실적 5억원 미만]의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
2. 동일조건 거래의 경우 매년 최초 한번만 자료를 제출 하면 됩니다.
3. 자료 제출 분야가 8개 분야로 한정됩니다.
4. 자료의 사후 제출이 허용됩니다.



Q3. 언제 가격신고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하기 이전에 미리 가격신고[과세자료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과세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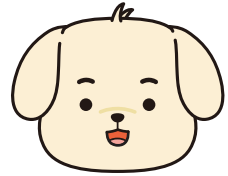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가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붙임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구분 : 송품장·구매계약서,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 지원, ③ 수수료·중개료,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⑤ 용기·포장비용,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금액, ⑧ 특수관계자거래]

Q5.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납세의무자 즉,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신고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며,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함께 생략됩니다. 다만,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더라도,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생략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가격신고하고 과세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Q7. 새롭게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 제도 개편의 근거가 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2025.7.1. 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수입기업이 과세자료 등과 관련하여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9.1.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롭게 개선되는 가격신고서는 2025.12.1.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Q8. 제도가 시행되는 9.1.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음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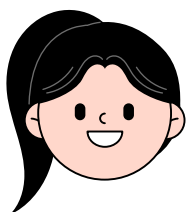
네.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9.1. 이후 자료를 제출 하더라도, 2026. 1.1.이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9.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세액심사나 관세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요. 수입할 때 제출하는 과세자료는 신고내용의 오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별도로
세액심사나 관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Q10. 얼마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또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관세조사를 받았더라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이며, 과세
자료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Q11. 혹시 나중에 세액심사나 관세조사를 받게된다면,
가격신고 할때 제출했던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번 제출한 과세자료는 나중에 관세조사 등을
받더라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과세자료 제출 생략

**Q12. 모든 AEO 및 ACVA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 되나요?**



AEO의 경우는 '수입부문' 만 해당되며, ACVA는 관세평가분류 원장이 심사 후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과세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13.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미만의 기준은 어떤 세목이 포함되나요?

관세청에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제세 납부의 총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14. 전년도 납부세액 실적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전년도 납부실적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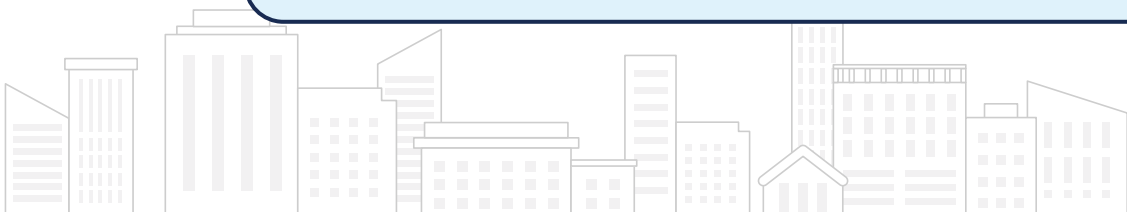
☞ [유니패스]→[정보조회]→[자사실적]
→[수출수입환급 납세실적]→'제세납부실적'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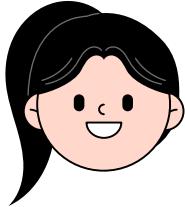
Q15. 전년도 납부세액은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가요?



매년 1.15.부터 전년도 납세실적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매년 1.1.부터 1.31.까지는 전년도 실적이 아닌, 전전
년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Q16. 과세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업체에게 별도로 알려주나요?



과세자료 제출 대상 업체에게 관세청에 등록된 주소로 해당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7월중]
2026년 부터는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등 전산상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25년 7월에 과세자료 제출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Q17. 수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AEO 또는 ACVA 업체인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EO 기업의 경우 수입부문에 대해서만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CVA 결정 업체라 하더라도 ACVA 결정 물품이 아니라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CVA 역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18. 본사와 개별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제세 납부 실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사업장 단위의 제세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개별 사업장 기준의 납부실적이 확인됩니다.



**ACVA 결정 업체인데 5년(기본3+연장2) 유효기간이 종료
Q19. 되어, 재신청 예정입니다. ACVA 신청 후 심사 기간에도 과
세자료 생략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유효기간 내의 ACVA 결정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자료 생략이 가능하며, ACVA 심사 기간에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동일 조건 거래, 연 1회 과세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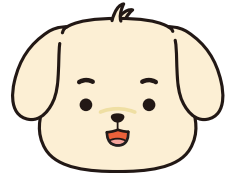
Q20. '같은 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같은 판매자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Q21. 연 1회 제출이 원칙인데 연중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최초 계약서를 제출 하고 나서 계약 조건 변경이 있다면 이후 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22. 매년 최초 1회의 기준은 업체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요. 달력에서 확인하는 1억원[1.1.~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업체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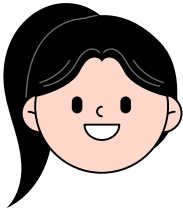
Q23. 동일한 계약 조건인데, 판매자가 변경된 경우에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판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 해야합니다.



Q24.

본사와 개별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에,
본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료를 한번 제출했다면,
그 외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판매자와 같은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경우 다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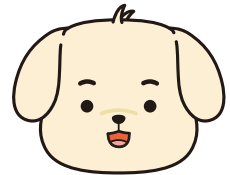


네. 개별사업장 단위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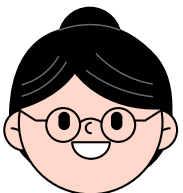
최초 과세자료 제출 이후, 같은 조건 물품을 추가로
수입할때, 최초 과세자료가 첨부된 수입신고번호를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9.1.까지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인기재란'에 기재하고,
이후 가격신고서 개편 시행 이후인 2025.12.1.부터는 가격
신고서에 신설된 '7.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Q26.

(특수관계) 이전가격 보고서상에서 서로 다른 산식을
적용하는 상이한 품목을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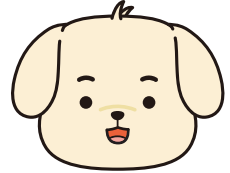


이전가격 산정 방식[산식]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이전
가격] 보고서 또는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면 '동일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이전가격 보고서에 여러 공급자에 대한
Q27.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공급자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동일한 판매자와 동일 조건의 거래에 대해서 매년 1회
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래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임 관련) 운임·보험료 관련하여 포워더 또는 선사와
Q28. BL 건별 계약을 통해 운임 인보이스가 발행되는데, 이런 경우
수입신고 건마다 운임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운송조건으로 반복
하여 수입한다면, 연중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동일한 운송조건'이란 운임 등을 구성하는 항목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각 항목의 금액 차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체선료, BAF 등 운임 등을 구성하는 조건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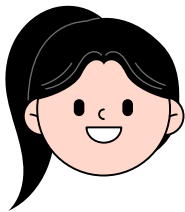
(운임 관련) 포워더나 선사가 바뀌는 경우
Q29. 동일한 조건이 아닌가요?

포워더나 선사가 바뀌더라도, 운송과 관련된 비용의 항목이
동일하다면 '동일조건'에 해당합니다.



4. 8개 분야 과세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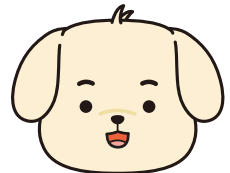
Q30. '송품장'과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를 필수 제출하라고 하는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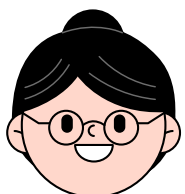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공급확약서[Offer sheet] 등 무역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다른 형식의 문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Q31. 수출자와 로열티 계약을 하고 수입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가산요소로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로열티를 과세가격으로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지 않다면 과세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Q32. 로열티 계약은 있는데, 과세가격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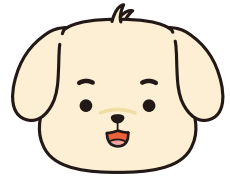


우선,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민원질의 또는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 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Q33. 로열티의 경우 결산 이후에 최종 해외 송금액이
확정되는데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로열티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로열티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34. 과세자료 제출 분야 ①~⑦의 경우에, 가격신고서 상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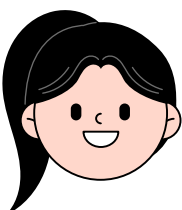
아니요. 가격신고서에 ①~⑦ 분야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35. 운임의 경우, 거래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CIF, DDP 조건의 경우에,
운임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운임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과세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도 됩니다. 다만, 운임 이외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유류
할증료, 체선료]이 있다면 별도로 가산하여 신고하고 자료
를 제출해야 합니다.



Q36. **(특수관계)**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데 통상적인 가격으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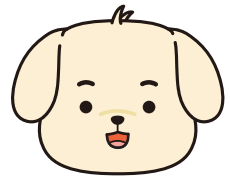
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8가지의 특수
관계 범위에 해당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7. (특수관계) 특수관계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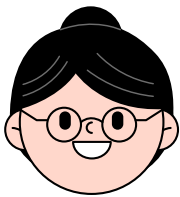
아니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8가지의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8. (특수관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대한 과세자료를 만들거나 관리하지 않고 이메일 등을 통해 매년 거래가격을 수출자로 부터 통보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 가격결정자료'를 생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관자간의 거래 가격이 어떠한 근거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39. (특수관계)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과세자료를 관세사 등 신고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현재 수입기업이 직접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인은 열람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자료의 직접제출 등 보안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세청 또는 세관에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40. (특수관계)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이전가격 보고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이전가격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형식, 문서명에 상관없이 수입물품 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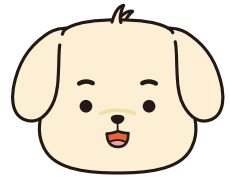
Q41. (미제출사유서) 어떤 경우에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는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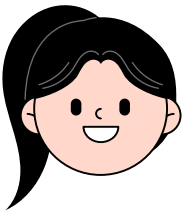
과세자료 제출 8개분야에 한가지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해당 사항이 한 개라도 있으면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42. (미제출사유서) 미제출 사유서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38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세자료 대신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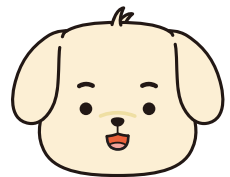
Q43. (미제출사유서) 미제출 사유서를 수입건별로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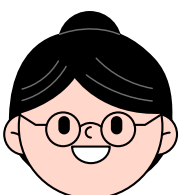
아니요. 미제출 사유서도 과세자료와 마찬가지로 '동일판매자, 동일조건'의 경우 한번만 제출하고, 추가로 수입하는 경우 미제출 사유서가 제출된 신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Q44. (미제출사유서) 미제출 사유서를 좀 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12.1.부터 전산에서 간소한 방법으로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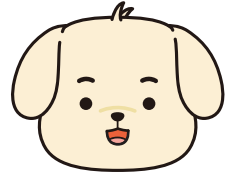
Q45. (미제출사유서) 서식의 '⑤ 미제출 사유'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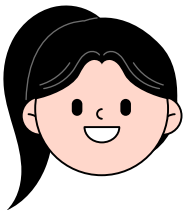
- 과세자료 제출 8개분야와 관련된 거래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 ① 부분 체크
- 과세자료 제출 8개분야와 관련된 거래 사실은 있으나 가격 신고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② 부분 체크하고 관련 사유를 추가로 기재

Q46. [지연제출사유서] 새로운 수입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출자로 부터 과세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 통관할 수 없나요?

아니요. 우선 과세자료 대신에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30일 이내 과세자료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Q47. [지연제출사유서] '지연 제출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수출자 사정인 경우에는 ① 부분 체크, 수입자 사정인 경우에는 ② 부분 체크, 기타 다른 사정인 경우에는 ③ 부분에 체크하고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Q48. [지연제출사유서]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 신고할 때 가격신고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하고 만약,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 사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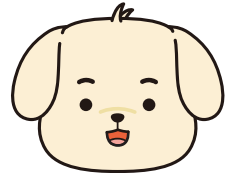
5. 과세자료 사후 제출 요청 및 제재관리 방안

Q49. 과세자료의 확인은 통관 과정에서 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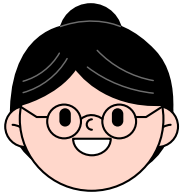
아니요. 과세자료의 확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합니다.

Q50. 과세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제재조치가 시행되나요?

아니요. 세관장이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조치가 시행됩니다.



Q51.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Q52.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우선, 월별납부 업체 승인의 취소 또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와 같은 납세제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세액심사 또는 관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